

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

완도군수 귀하

2024년 5월 1일

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완도군의회로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4년 4월 12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 (20일간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결산검사는 2023회계연도 완도군의 세입·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, 완도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부속서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,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,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.

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완도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, 별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·세출, 명시·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, 기금, 채권·채무, 재산 및 물품은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완도군 결산검사위원

대표검사위원 박성규 (인)

검사위원 서현종 (인)

검사위원 허정수 (인)

검사위원 양응열 (인)

검사위원 고영상 (인)

검사위원 손연지 (인)